

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419호)

심사보고서

1997. 6

총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7. 5. 13 고 성 군 수
- 나. 회 부 일 자 : 1997. 6. 16
- 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7. 6. 16 상임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제안이유

- 지방행정의 전산화 추세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주민서비스 향상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기능직렬중 전기직 2명, 운전직 1명, 필기직 1명을 전산직으로 조정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정원조정 (안 제2조)

- 본 청 : 237명 → 239명
- 사업소 : 17명 → 15명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주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능직렬 중 전기직, 운전직, 필기직을 전산직으로 조정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

○ 문 : 우리의 결원은

● 답 : 27명 정도

○ 문 : 정원은 군에서 요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주는 것인지

● 답 : 정원 중원은 상부의 승인을 받음.

5. 토 론 :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1997. 6. 1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